

방 송 통 신 위 원 회

심의 · 의결

안전번호 제2017 - 14 - 087호

안 건 명 판매점의 외국인 대상 영업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
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결연월일 2017. 3. 21.

주 문

1. 피심인들은 외국인 대상으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.
2.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(휴업일 제외) 각 공표하여야 한다.
3.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금 액 : 각 1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이 유

1. 조사 경위

가. 조사배경

- '16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부문에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,
- 외국인 영업 관련 판매점에 대한 실태점검('16.11.18.~12.9)을 하였으며, 점검 결과 공시한 지원금에 추가로 100분의 15를 더한 금액을 초과한 지원금 지급 등의 사실이 드러나 판매점에 대하여 사실조사('17.1.16.~2.8.)를 실시하게 되었다.

2. 사실조사 결과

가. 조사 대상

- 조사대상 기간('16.8.1.~10.31.) 중 외국인 가입실적 및 불법행위 신고·제보 등을 토대로 파악된 44개의 판매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.

나. 행위사실

-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(이하 '단말기유통법'이라 한다)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,

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- 피심인들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에 추가로 100분의 15를 더한 금액보다 더 많은(즉 그 금액을 초과한) 지원금(이하 '과다지원금')을 지급하였으며, 과다지원금 지급의 세부 내역은 별지와 같다.
- o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2월 22일 '행정처분 사전통지'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각 부여하였다.

2. 위법성 판단

가. 관련법 규정

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,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대리점·판매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,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.

<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>

제4조(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)

-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사실조사 등)

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(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), 대리점,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·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,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나. 위법성 판단

피심인들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각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(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)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.

3. 시정조치 명령

가. 위반행위의 중지

피심인들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외국인 대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.

나.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

피심인들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.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 (휴업일 제외) 각 공표하여야 한다.

< 공표문안 >

○○○(판매점명)은 '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' 위반을 이유로
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



○○○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'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'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

2017년 0월 0일

○○○(판매점명) 대표자 ○○○

※ 공표문 크기 A2(42cm × 59.4cm), 활자크기 2.0cm×2.5cm이상

4. 과태료 부과

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[별표 3]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.

가. 기준금액

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[별표 3]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이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각 적용한다.

< 과태료 부과기준 >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구분	과태료 금액(만원)			
	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위반	4회 이상 위반
라.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	법 제22조 제3항제3호	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	100	300	600	1,000
		대규모유통업자	500	1,500	3,000	5,000

※ “대규모유통업자”란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,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)에 속하는 대리점·판매점을 말하며, 피심인들은 ‘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’에 해당 한다.

나. 추가적 가중 및 감경

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[별표 3]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,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,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

위반 건수가 2건 이상인 점 등의 사유로 부과기준 금액의 50%를 각 가중한다.

다만,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바,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[별표3]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50%를 각 감경한다.

다. 최종 과태료

이에 따라, 피심인들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,000,000원에 50%를 가중한 금액(+500,000원) 및 50%를 감경한 금액(-500,000원)을 합한 1,000,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.

5. 결론

상기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(시정명령) 및 제22조(과태료)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,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

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위 원 장 최 성 준 (인)

부위원장 김 재 홍 (인)

위 원 김 석 진 (인)

위 원 이 기 주 (인)

위 원 고 삼 석 (인)